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33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5일

군산시장 문 동 호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기금의 조성기간은 2020.12.31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12.31.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① (생략) ② (생략) ③ 기금의 조성기간은 2015.12.24.까지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①(현행과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금의 조성기간은 2020.12.31까지로 한다.</u></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12.24.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 12. 31.까지로 한다.</u></p>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조성기간은 2020.12.31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12.31.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2.07.26>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지원과장, 임피면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 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 의회 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묘 시설계장, 서기는 장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주민지원협의체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체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기금운영 및 관리

제16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종류·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2.07.26>
2. 분임기금운용관: 복지지원과장
3. 기금출납원 : 장묘시설계장

제18조(회계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수입, 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21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내에 전년도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기금의 조성기간이 2015. 12. 24. 까지로 명시되어 기금 조성기간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동 조례의 목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 확충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조성 기간의 개정을 통한 충분한 재원 조성 기간 확보로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도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기간 개정

“기금의 조성기간은 2015.12.24.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조성기간은 2020.12.31까지로 한다”로 개정(제2조 제3항)

나. 기금 존속기한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12.24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 12. 31.까지로 한다.” 로 개정(제3조)

〈전라북도 군산시 제공〉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34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5일

군산시장 *본 통 선*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국외에 2년 이상 파견중인 공무원

제3조제3항 중 “근무중인”을 “근무 중인”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원편의 시설”을 “직원편의시설, 보육시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우수·퇴직 공무원”을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제9조제2호 중 “후생복지 시설”을 “후생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를 제11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군산시 소속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산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산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산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

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p> <p>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u></p> <p>3. <u>국외에 2년이상 파견중인 공무원</u></p> <p>4. (생 략)</p> <p>③ 시장은 군산시에 <u>근무중인</u>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2. <u>국외에 2년 이상 파견중인 공무원</u></p> <p><u>원</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③ ----- <u>근무 중인</u> ----- ----- ----- -----.</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u>직원편의 시설</u>, <u>체력단련시설</u>, <u>휴양시설</u>, <u>구내식당</u>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u>직원편의 시설</u>, <u>보육시설</u>----- ----- -----.</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p> <p>1. <u>우수·퇴직 공무원에 대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u></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p> <p>1. <u>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u>-----</p>

<신 설>

2.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신 설>

<신 설>

- 2.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 3. ~ 8. (현행 제2 ~ 7호와 같음)
-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군산시 소속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에서 군산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산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

<신 설>

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산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 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생략)
-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4. (생략)

제12조(위원회 기능) -----

-----.

- 1. (현행과 같음)
- 2. ----- 후생복지시설-----

- 3.·4.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 제4항 개정(2015.05.18. 공포, 11.19. 시행)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표준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단체협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제8조 신설)
- 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신설)
- 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신설)
- 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적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제2호)
- 마. 후생복지시설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6조)
- 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범위·대상자 확대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호, 제2호, 제9호)
-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라북도 군산시 제공〉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30호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4월 1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범위)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재난의 범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재난으로 한다.

제3조(설치) 상황실은 건설교통국내에 둔다.

제4조(임무) 상황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
2. 재난상황의 상급기관 보고와 재난관련 관·과·소 및 유관기관·단체등에 전파
3. 관·과·소, 읍·면·동 및 유관기관·단체등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4. 중앙·도 및 사고대책본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지원
5. 재난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때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
6. 재난상황 관련자료 통계 및 전산관리
7. 상황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행정,서무,장비,비품 등의 관리
8. 읍·면·동 재난상황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
9. 재난정보 주민서비스 제공 (재난예·경보시스템 이용)
10.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운영·관리
11.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관리

제 2 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제5조(운영) 상황실은 연중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4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 (이하 “근무반” 이라 한다)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근무반은 1일 2개반(일직,숙직)으로 편성하고 근무일 일직 근무반은 안전총괄과 직원이, 숙직 근무반 및 공휴일 일직 근무반은 안전총괄과, 지역경제, 산림녹지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주택행정과, 하수과 직원이 순번으로 정하여 근무한다.

③일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에 준한다.

④숙직 근무시간은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⑤상황실장은 평일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공휴일 주간 및 야간에는 본청 당직사령이된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인원을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말연시 및 연휴등 비상근무 시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 지시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황실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재난관련부서)
4. 근무반의 교육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근무) ①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하여 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근무명령은 안전총괄과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

③근무명령을 받은자가 출장,휴가,교육,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근무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⑤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수칙 및 근무자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제8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건설교통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 ②안전총괄과장은 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③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은 안전총괄과장이 관장한다.
- ④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행사차출 등 기타 근무에서 제외한다.

제 3 장 보고 및 전파

제9조(상황의 보고 및 전파)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계통 보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단체 및 관련 관·과·소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보고 :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보고 :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종합하여 보고
- ②주요 재난상황의 보고에는 일시·장소·원인·피해내용·응급조치 및 대응 및 복구활동사항, 향후 조치계획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1조(기록유지) ①당직자는 새올시스템에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하고 안전총괄과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새올행정시스템)
 2. 유관기관 연락사항 (새올행정시스템)
 3. 재난상황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②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재난의 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재난상황과 관련된 문서 및 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④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읍·면·동 상황 연락체계, 상황실 근무수칙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재난관련 관·과·소, 유관기관·단체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국장에게 보고한 후 안전총괄과, 재난관련부서 , 유관 기관·단체 및 긴급구조기 관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당직비)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의 근무환경은 상황실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① (생략) ②-----, 숙직 근무반 및 공휴일 일직 근무반은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직원이 순번으로 정하여 근무한다.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택행정과, 하수과 -----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2016.2.5.일 군산시 조직개편에 의거 건축과가 주택행정과 및 건축경관과로 분리되어 재난대비 관련성이 건축경관과 보다 하수과가 더 관련성이 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반 편성을 변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 하고자 종전 건축과에서 주택행정과와 하수과로 변경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과를 주택행정과 및 하수과로 변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전라북도 군산시 제공〉

군산시 공고 제 2016 - 576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3월 25일

군산시장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4조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선과제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 시민 감시단 및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운영(안 제10조4항)
- 나.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수거시 실비보상제 신설(안 제10조의2)
- 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구성(안 제12조1항,2항3호)
- 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마.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수탁자 적격심의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

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항제5호, 제4항)

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방법,

지도·감독 및 관리 방안을 정함(안 제18조제2항, 제18조2, 제18조의3)

사. 광고물 관련 수수료 반환내용 추가(안 제2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3일까지 군산시장(참조: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2) 전화 : 063-454-3612

(3) FAX : 063-454-429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454-3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2016-576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 및 활동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명 또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제1호**”를 “**다만, 제1호**”로, “**있다**”를 “**있으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국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지명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시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

제13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18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3항”을 “4항”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2.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명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
3.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5.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정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의3(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
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
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
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
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중지”를 “전자수입중지”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생략) <u><신 설></u></p> <p><u><신 설></u></p>	<p>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 및 활동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u></p> <p><u>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u> <u>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u> <u>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u> <u>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u> <p><u>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u></p>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시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
탁 등) ① (생 략)

② 1항의 위탁관리업체 등은 현
수막 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운영
하여 지정게시대의 이용현황,
현수막 게시가능일 등을 전산
입력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
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신 설>

5.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
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
정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
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
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
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
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
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
우

③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
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
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
우

<신 설>제18조의3(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수수료) ①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수입증지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설>

③ (생 략)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6 - 594호

공 고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40%정도)으로 인한 위탁사용료 증액(전년대비 28%)으로 인해 시설관리운영의 어려움과 현실화 적용에 따른 사용료 인상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 군산시 캠핑장 시설 사용료 조정(조례 제8조 제1항 [별표1])
 - 시설 사용료 현실화율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53, FAX:454-3329)
 - 전자우편 : ehgus235@korea.kr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 해양관광계(☎ 063-454-335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5~10월)		비수기				비 고
		현행	개정안	주말, 공휴일		평일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일반캠핑장 (1동/4인)	당일 (09:00~18:00)	10,000	20,000	7,000	15,000	5,000	13,000	전기·수도 사용료 별도
	1일	15,000	25,000	12,000	20,000	10,000	18,000	전기·수도 사용료 별도
오토캠핑장 (1동/4인)	당일 (09:00~18:00)	15,000	25,000	12,000	20,000	10,000	18,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1일	25,000	35,000	20,000	28,000	15,000	23,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캐러밴사이트 (1동/6인)	1일	30,000	40,000	25,000	33,000	20,000	28,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전기·수도 사용료	1일	3,000						
주차장	소형	3,000 (1일 체류 5,000)						
	중형	5,000 (1일 체류 7,000)						
	대형	10,000 (1일 체류 15,000)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 1면의 캠핑사이트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1면의 캠핑사이트에 텐트 1동 추가시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2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4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6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 주차장 사용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러밴사이트 이용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 소형 :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톤미만 화물자동차
 - 중형 : 1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
 - 대형 : 30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 화물자동차

군산시 고시 제2016-3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2014-74호(2014.07.04.)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3월 25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 조성사업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시 설 명	시설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비 고
연구시설	435,017㎡	435,017㎡	연구시설(시험로, 지원동), 녹지 저류지, 도로, 주차장 조성

- ※ 금회 : 건축물 4동/3층(엔지니어링센터, 시험준비동2동, 출입통제소) 신축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 나. 성 명 : (재)전북자동차기술원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당 초 : 2014. 07. 04. ~ 2017. 09. 30.
 - 나. 변 경 : 2014. 07. 04. ~ 2018. 0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성명	실주소
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3	유	4,313	4,31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96	제	3,977	727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5	구	20,608	20,608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6	염	41,349	41,349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7	잡	2,073	2,07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8	잡	902	902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10	염	48,863	48,86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8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11	잡	5,263	5,26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5-92	구	14	14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0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1-5	유	18,142	18,142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2-4	제	4,627	2,686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3	도	5,693	5,69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4	제	1,111	1,111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5	염	46,826	46,826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6	잡	1,974	1,974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7	염	45,312	45,312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8	잡	1,967	1,967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8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09	염	40,684	40,684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1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0	잡	1,993	1,99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0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1	잡	2,152	2,152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1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2	염	41,183	41,18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2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3	염	40,750	40,750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3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4	잡	2,212	2,212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4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17	구	7,871	7,871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5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79-1	도	14,688	1,116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581-1	제	8,225	34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	염	47,012	47,012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28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6	잡	1,878	1,878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군산시 고시 제2016-4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3월 25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소룡동 1662번지 (군산2 국가산업단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공단3폐기물처리장)사업
 - 나. 명 칭 : 작업장(토양정화)시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 면적(m ²)	실 시 계 획			비고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폐기물 처리시설	공단3 폐기물처리장	32,548	32,548	11,499	12,367	9동

건 물 명		완료 여부	건축연면적(m ²)					계
			지하실	1층	2층	3층	4층	
1동	PIT 동	완 료	165.89	267.41	128.64	158.18	158.18	878.3
	작업장(토양정화)	착 수		1,840.02				1,840.02
2동	경 비 동	완 료		25.2				25.2
3동	폐기물창고	완 료		1,068.3	152.5	152.5	152.5	1,555.8
4동	사 무 동	완 료		363.13	381.75			744.88
5동	창 고	완 료		1,080.8				1,080.8
6동	창 고	완 료		980				980
7동	작업장(폐산재활용)	완 료		660				660
	폐수수탁처리시설	완 료		495				495
		미착수		437.97				437.97
8동	작업장(토양정화업)	완 료		1,440				1,440
9동	작업장(폐합성수지)	완 료		2,229.95				2,229.95
합 계			165.89	10,917.78	662.89	310.68	310.68	12,367.92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62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엔아이티 대표 김주한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초 : 2005. 5. 21. ~ 2016. 3. 30.

나. 변경 : 2005. 5. 21. ~ 2018. 3.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의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군산시 소룡동	166 2	잡	32,548. 7	32,548. 7	군산시 소룡동 1662	(주)엔아이티	-	중소기 업은행	근저 당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6-4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5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5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3월 25일

1. 사업시행지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40-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56호선)사업
 - 나. 명 칭 : 해나지오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선명	시설 결정			금회 실시계획 인가			비고
		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로	소로1-256	10	194	1996.06.01. (군산고210)	10	194	2,100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6. 3. 25.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1/2)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지곡	140-13	도	63	15		군산시		
2	"	35-14	도	129	1		군산시		
3	"	140-6	도	66	38	군산시 조촌동 865-3 용경빌딩 2층	주식회사 중남주택		
4	"	140-7	답	26	4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42-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1동 1405호	정재호		
5	"	140-8	도	13	9	지곡동 79	강종렬		
6	"	140-1	답	155	120		국(재무부)		
7	"	35-13	대	518	11	광주 서구 풍암동 1121-1 대복빌딩4층	도현종합 건설주식 회사		
8	"	479-8	도	76	22		국(농수 산부)		
9	"	36-28	답	56	55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59-59 은파리젠시빌파크102-906	김경욱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 은행
10	"	63-3	구	360	11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11	"	63-12	답	303	223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59-59 은파리젠시빌파크102-906	김경욱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 은행
12	"	63-16	답	264	100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654 대주파크빌102-1603	최현열		
13	"	63-17	답	165	62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99 한빛아파트116동1402호	송한규		
14	"	63-18	답	397	127	대전광역시유성구지곡동977 반석마을아파트1단지103-2202	조수민		
15	"	63-19	답	331	12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95. 402호	허영복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 은행
16	"	63-20	답	175	52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719 경남아너스빌2단지아파트207-502	송인우		
17	"	63-21	답	165	53	대전광역시동구용전동194-3 한숲아파트102-904	유정애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6-1 현대아파트 102-305	이영희		
18	"	63-22	답	165	57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2-9 현대아파트6-102	이성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 은행
19	"	63-23	답	165	63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719 경남아너스빌2단지아파트207-502	장호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2/2)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20	지곡	63-24	답	162	69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1062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216-1302	김은석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702, 301호	유자미		군산시
						대전광역시유성구상대동 438-16 평화이지아파트 101-1403	탁경혜		
21	"	63-25	답	166	68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99 한빛아파트128-1001	손정숙		
22	"	63-26	답	106	60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407 갈마아파트303-605	김영숙		
23	"	42-4	답	398	339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59-59 은파리젠시빌파크102-906	김경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 은행
24	"	63-61	답	280	4	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201 동아아파트101동1403호	김영희		
25	"	63-62	답	280	40	군산시수송동로91, 101동 102호(수송동,수송아이파트)	김판수		
26	"	43-11	답	232	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99-12 301호	조순자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81-1 새피앙아파트101동 508호	신정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8 한마루아파트 103호	이희진		
27	"	43-12	답	165	114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99 한빛아파트116동1402호	송정규		
28	"	43-13	답	165	124	충청남도 서치군 비인면 성내리 230	곽지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 은행
29	"	43-14	답	331	23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66-3	김삼순		

군산시 고시 제2016 - 4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22.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6-0002호 (2016. 3. 22.)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시 설림길 11)
- ③ 허가목적 : 항로표지 등부표 4기
- ④ 허가장소 : 군산항과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공유수면(해상)
- ⑤ 면 적 : 11,600m²
- ⑥ 허가기간 : 2016. 3. 22. ~ 2031. 2. 28.까지(15년)
- ⑦ 세부사항

표 지 명	구조	위치(WGS-84)	면적*(m ²)	비고
합 계	4기		11,600	
개야도어장1호 등부표	등부표 (황원통형)	N 36° 01' 24.0" E 126° 32' 28.8"	2,900	등화장치 1식
개야도어장2호 등부표	등부표 (황원통형)	N 36° 01' 17.5" E 126° 32' 28.8"	2,900	등화장치 1식
개야도어장4호 등부표	등부표 (황원통형)	N 36° 01' 30.0" E 126° 33' 01.9"	2,900	등화장치 1식
개야도어장6호 등부표	등부표 (황원통형)	N 36° 01' 43.2" E 126° 33' 24.5"	2,900	등화장치 1식

군산시 고시 제 2016 - 4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22.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하나건설
 - 나. 대표자 : 장치성
 - 다.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길 13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주)문장건설
 - 나. 대표자 : 장치성
 - 다.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3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9-2외 1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임대)
 - 다. 대지면적 : 18,936.0000m²
 - 라. 건축면적 : 15,120.6577m²
 - 마. 연 면 적 : 118,517.1346m²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38~40층 /아파트 7개동 외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869				
59A	민영주택	256	59.8935	28.9594	88.8529	
59B	민영주택	140	59.9480	29.0183	88.9663	
59C	민영주택	140	59.9119	28.3182	88.2301	
59D	민영주택	222	59.9306	28.9435	88.8741	
59E	민영주택	111	59.9152	28.6964	88.6116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166,166,391천원

차. 사업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9년 9월 30일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사업계획승인일 : 2016. 3. 21.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6-46 호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25.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 3건(새만금산단1로 외 2건)

신규 도로명	도로명 부여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기간 : 2016. 3. 25 ~ 4. 7(14일간)

3.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명 부여 신청		주민의견 수령공고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도로명 부여 고시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	10일 이내	⇒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	14일간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 대 상 : 새만금산업단지

연 번	도로명	도로 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중심선	관할 행정 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부여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 지점	끝지점					
1	새만금산단1로 (Saemangeumdan 1-ro)	1,025	14	로	미정 (공유수면 매립지)	미정 (공유수면 매립지)	도면 참조	미정	20	1→104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2	새만금산단2로 (Saemangeumdan 2-ro)	2,379	21.5	"	"	"	"	"	"	1→238	"
3	새만금산단3로 (Saemangeumdan 3-ro)	4,024	17	"	"	"	"	"	"	1→404	"

●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위치도

새만금산업단지(1,2공구)



군산시 고시 제2016 - 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수리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군 산 시 장

1. 점용·사용 협의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상교통 안전 도모 및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 1) 위 치 : 군산항과 개야도간 해상
- 2) 사 업 비 : 26백만원
- 3) 공사내용 : 항로표지 4기 설치(등표)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3월
- 준공예정일 : 2016. 12월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16. 3. 25.

군산시 고시 제 2016 - 5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정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16-45호(2016.03.2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6. 3.30.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하나건설
 - 나. 대표자 : 장치성
 - 다.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길 13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주)문장건설
 - 나. 대표자 : 장치성
 - 다.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63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9-2외 1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임대)
 - 다. 대지면적 : 18,936.0000m²
 - 라. 건축면적 : 15,120.6577m²
 - 마. 연 면 적 : 118,517.1346m²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38~40층 /아파트 7개동 외
 -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869				
59A	민영주택	256	59.8935	28.9594	88.8529	
59B	민영주택	140	59.9480	29.0183	88.9663	
59C	민영주택	140	59.9119	28.3182	88.2301	
59D	민영주택	222	59.9306	28.9435	88.8741	
59E	민영주택	111	59.9152	28.6964	88.6116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66,166,391천원

차. 사업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9년 9월 30일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

7. 사업계획승인일 : 2016. 3. 21.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7	대명동 하나리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대명동 139-2번지 일원	-	증)19,585	19,585	

나.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47	군산시 대명동 139-2번지 일원	19,585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2	149	10~15	국지 도로	186	대로3-4	소로1-42	일반 도로	-	금회	
기정	소로	3	744	6	국지 도로	128	대명동 139-2	금암동 73-128	일반 도로	-	2013.1.18	
변경	소로	3	744	6~7	국지 도로	128 (52)	대명동 139-2	금암동 73-128	일반 도로	-	2013.1.18	폭원확장
폐지	소로	1	426	10	국지 도로	186	대로3-4	소로1-42	일반 도로	-	2013.1.18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중로 2-149	• 노선 신설 - L=186m, B=10m~15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소로 3-744	소로 3-744	• 일부구간(L= 52m) 폭원확장(B=증 1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소로 1-426	-	• 노선 폐지	• 중로2-149호선 신설에 따른 노선폐지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1BL	19,585	①	군산시 대명동 139-2번지 일원	18,936	공동주택용지
			②	군산시 대명동 139-2번지 일원	649	도로용지 [중로2-149] [소로3-744]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80% 이하	조례 8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조례 1,000% 이하
		높 이	40층 이하	-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
주변도로 폭원확장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확폭 - 중로2-149호선 일부구간(L=140m) 개설 : B= 증 5m - 소로3-744호선 일부구간(L=52m) 확폭개설 : B=증 1m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군산선	일반철도	개정동구역계	군산역북측	개정동군산역	6,900	172,040	건고526 (67.7.25)	
변경	1	군산선	일반철도	개정동구역계	군산역북측	개정동군산역	6,900	170,383	건고526 (67.7.25)	

나.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군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기정)172,040㎡ → 변경)170,383㎡ - 감)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명동 139-2번지 외 1필지에 저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철도) 제척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6-51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1.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6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1-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안길 197	20160315	20090508	운회,아산,발산,통사 리를 지나는도로
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57-6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안길 219-7	20160401	20090508	운회,아산,발산,통사 리를 지나는도로
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490-1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149	20160401	20100125	행정리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4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55-2	전라북도 군산시 외산3길 4(구암동)	2016030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98-21	전라북도 군산시 현충로 75-1(나운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39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19(나운동)	20160401	20100125	수송택지의 중심도로 로 수송동에서 인용
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73-3	전라북도 군산시 신설로 45(나운동)	20160401	20100125	옛 지명 인용
8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58-16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281	20160315	20111014	나포면 서포,주곡,옥 근리에 십자들이 존재 하여 지역명칭 인용
9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58-1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283	20160315	20111014	나포면 서포,주곡,옥 근리에 십자들이 존재 하여 지역명칭 인용
10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동 214-19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북길 276-33(내초동)	20160401	20070528	옥서면 북쪽 관통도로
11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863-123	전라북도 군산시 궁멸길 71(내흥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2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385-1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30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2차)	2016030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3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73-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덕봉2길 103-1	20160401	20100125	덕봉 마을 소재
1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 경리 994-17, 1335, 1334, 994-3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금반길 7	20160302	20100125	지경리 금반마을 소재
15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87-22, 887-2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65(문화동)	20160315	20100125	군산대학교를 지나는 도로
16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376-5	전라북도 군산시 황룡로 37(미룡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7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421-9	전라북도 군산시 내사2길 15(사정동)	201603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8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493-1	전라북도 군산시 십자다리길 20(산북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9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 동 1551-1, 1551-6, 1551-5, 1551-2	전라북도 군산시 십자다리길 65(산북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0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158-1	전라북도 군산시 해칠길 17(산북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1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71-12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로 118(산북동)	20160302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2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75-8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5길 92(산북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3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5-7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50(산북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4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7-22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1길 60-1(산북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25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314-35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7길 25(삼학동)	201603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6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314-36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7길 27(삼학동)	201603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7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102-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용천로 357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106-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라로 295	20160401	20100125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29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67-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월포길 144	20160302	20070528	성덕마을 소재의 옛 도로이름
3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0-9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28(수송동)	201603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93-5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5길 4-3(수송동)	20160302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3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02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3길 3(수송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33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7-3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82(수송동)	20160302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3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34-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북로 34(수송동)	20160401	20100125	수송택지의 북쪽도로 로 수송동에서 인용
3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68-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7길 23(수송동)	20160401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36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38-1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재길 26-21(오룡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37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38-1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재길 26-23(오룡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8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38-1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재길 26-20(오룡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9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94-14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길 57-8(오식도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40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00-14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길 36-1(오식도동)	201603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29-9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길 27(오식도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여
42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33-7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2길 36-2(오식도동)	201603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3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42-13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1길 36-3(오식도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4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49-5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1길 12-6(오식도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5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73-2	전라북도 군산시 분말길 29-23(오식도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6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73-9	전라북도 군산시 분말길 29-13(오식도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7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62-9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340(오식도동)	20160401	20100125	군장산업단지의 동서를 통한하는 중심도로로 지역명칭 및 방향성에서 인용
4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814-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222	20160315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49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3-4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6-1	20160302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98-9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177-60	20160303	20090508	섬이름 이용
5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52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348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대려1길 86	20160302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53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178-9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길 134	20160401	20070528	옥봉리 신오산촌 마을 소재
54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94-5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장전길 5	20160401	20070528	옥서면 장전마을 소재
55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94-6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길 89	20160401	20070528	옥서면 소재 관통도로
56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 면 영창리 808-5, 808-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소령길 53	20160401	20100125	영창리 소령통 마을 소재
57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2-21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22-11(장미동)	20160317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8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553-2	전라북도 군산시 부골2길 47-6(조촌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22-1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74(조촌동)	201604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0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49-23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57-15(지곡동)	20160401	20100125	주변에 군산의료원이 있음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61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49-26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57-17(지곡동)	20160401	20100125	주변에 군산의료원이 있음
62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26	전라북도 군산시 상지곡2길 5-1(지곡동)	2016030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63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46-1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초교2길 18	20160315	20070528	회현초등학교 소재, 옥봉평야길을 보조간선 양포로로 바꾸면서 소로구간이 하나 남아 회현초교2길 부여
6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36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신학당길 4	20160315	20070528	신학당마을 소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순 번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서길 31(경암동)		20160318	20100125	주변에 경포천이 흐름
2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76(수송동)		2016031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순 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666 (소룡동, 동회금속.밴딩)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664 (소룡동, 동회금속.밴딩)	20160318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공 고 문

[군산시 공고 제2016 - 503호]

2016년도 군산시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군산시양성평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군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대상사업 분야(사업규모 500만원 이상이면서 3개년 이상 추진가능한 사업)
 - 군산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 실시
 -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의 추진 지원
 - 기타 남녀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제외 사업
 - 단체설립 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단체
 - 회원 상호간 친목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
 - 사업계획의 부실 또는 사업효과 극소인 사업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도·시비 지원 사업
 - 인건비 성격의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 단체,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사업(일몰제 우선적용)

3. 사업 추진 기간

- 2016. 4월 ~ 12월에 시행하는 사업

4.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6. 3. 21. - 2016. 3. 30.(10일간) 18:00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소인 유효), e-mail접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3개년),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정),
단체현황 및 2015년 활동실적, 임원 및 회원 명단,
고유번호증(세무서 비영리단체증명) 각 1부
- ※ 방문 및 우편접수시 관련서류 e-mail 송부 : answlsdk11@korea.kr
- ※ e-mail접수시 전화확인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신청건수 :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접수처 :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454-3214)

5. 심사 및 통보

- 심사일정 : 2016년 4월중
- 심사방법 : 군산시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원액 결정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6.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 종료후 10일내 정산서 제출
- 정산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확인)

【 별지 3 】

사업계획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 장에 요약 (심의위원 제공자료)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등록기관 및등록일			2015 총예산 (단위 : 천원)	
	시군지회수			상근직원수(명)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목적				
	사 업 비 (천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사업대상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사업비 산출 내역					
2015 공약활동 추진실적					
2015 보 조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효과				

【 별지 4 】

사 업 계 획 서

(심의위원 제공자료)

1. 사 업 명 (제목)

○

2. 목 적

○

○

3. 사업내용

○ 추진기간·일시

○ 장 소

○ 참여대상 및 인원

4. 추진방법

○

○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

○

6. 기대효과

-
-

7. 사업비 구성

- 1) 총 사업비 : 천원(100%)
- 2) 보조금신청액 : 천원(%)
- 3) 자부담 : 천원(%)
- 4)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 인건비(단체의 직원으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자는 제외), 통역비 등
홍보비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등 홍보용품 제작등
교통비				-시내·외 교통비, 버스임차료 등
사업진행비				-다과비, 이체수수료등 (보조금 총액의 5%이내)

※ 사업비 내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차후 3개년 추진계획

- 심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 계획, 사업비 구성 등 자유롭게 작성

【 별지 5 】

단 체 현 황

단 체 명	한글 (영문)					
대 표 자 명	한글 (한자)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무실소재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전 화		E-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겸용)		
창립연월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사단법인(), 등록단체()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명(예: 사무처장 ○명, 총무 ○명, 간사 ○명)					
설립목적						
조직(임원) ※현 회 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자택 또는 HP)	임기
	회 장					
	부회장					
	총 무					
	간 사					
재정상태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2012					
	2013					
단체현황	총회원수 : 명					
2016년 사업 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별지 6 】

2015년 공익사업 추진실적

※ 2015년에 추진한 사업 중 공익활동 실적만을 기재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사업비 재원(천원)					
					계	국비 (보조처)	도비 (보조처)	시비 (보조처)	자부담	기타 (보조처)

군산시 공고 제2016-55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3월 25일

1. 열람 기간 : 공고문 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사정동 518-7번지의외 78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호선)사업
 - 2) 명 칭 :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1단계)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실시계획인가					비고
				기 개설		금회 시행			
	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중로2-6	30	5,847	건고228 (‘86.5.23.)	30	2,367	30	350	12,878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조서 참조

사.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무상귀속	사정동	562-14	도	687	76	-	농수산부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464	전	88	88	이정환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지분 2분의 1
						이정은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지분 2분의 1
2		464-1	전	1,423	53	이정환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지분 2분의 1
						이정은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지분 2분의 1
3		466	전	122	27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4		466-1	전	494	21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5		466-2	전	4	1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6		466-3	전	619	31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7		466-4	전	747	747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8	사정동	466-5	전	17	17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9		466-6	전	447	447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0		467	전	958	136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1		467-1	전	977	26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2		467-2	전	394	394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3		467-3	전	15	15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4		468-1	전	172	172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5		468-2	전	351	351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6		468-3	전	29	23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7		469	전	98	98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	사정동	469-1	전	143	23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19		470	전	251	251	이정환 이정은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20		470-1	전	579	167	이정환 이정은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21		471	전	324	324	김동섭	군산시 영화동 9-5번지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지상권	
22		471-1	임	873	873	고현식 장승희	군산시 백토로 242, 305동 1201호(나운동, 롯데4차아파트)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지분 873분의 759 지분 873분의 114
23		471-2	임	3,079	916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24		471-3	전	344	82	김동섭	군산시 영화동 9-5번지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지상권	
25		471-5	임	6	3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26		471-7	임	1,049	1,049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27		471-8	임	124	124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군산대건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28		472	전	22	22	김상우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651번지	산림조합중앙회		지상권	
29		472-1	전	1,023	59	김상우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651번지	산림조합중앙회		지상권	
30		473	전	1,217	11	이정환 이정은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익산시 약촌로 268, 103동 402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31		516	전	36	36	군산시					
32		516-1	전	317	5	군산시					
33		516-7	도	2	2	군산시					
34		517	전	314	314	채명숙	군산시 사정동 518번지				
35		518	대	348	9	채명숙	군산시 사정동 518번지				
36		518-1	대	132	132	채명숙	군산시 사정동 518번지				
37		518-2	대	86	41	군산시					
38		518-3	임	2,500	221	채명숙	군산시 사정동 518번지				
39		518-4	임	131	93	군산시					
40	518-5	임	72	43	군산시						
41	518-6	대	45	45	채명숙	군산시 사정동 518번지					
42	518-7	임	862	830	채명숙	군산시 사정동 518번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3	520-1	전	919	18	전광준	김제시 서암동 390-1 서암3차동신아파트 805호					지분 5분의 1
					전광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동 902호					지분 5분의 1
					전 옥	군산시 사정동 536번지					지분 5분의 1
					전광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9-16번지					지분 5분의 1
					전후남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2 송천동1차쌍용아파트 103동1401호					지분 5분의 1
44	520-2	도	13	13	고도청	군산시 조촌동 403번지					
45	520-5	전	731	731	전광준	김제시 서암동 390-1 서암3차동신아파트 805호					지분 5분의 1
					전광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동 902호					지분 5분의 1
					전 옥	군산시 사정동 536번지					지분 5분의 1
					전광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9-16번지					지분 5분의 1
					전후남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2 송천동1차쌍용아파트 103동1401호					지분 5분의 1
46	520-6	도	35	35	군산시						
47	521-1	도	45	45	군산시						
48	521-2	답	2	2	군산시						
49	521-3	구	3	3	고상온	군산시 사정동 525번지					
50	521-4	도	53	53	고상온	군산시 사정동 525번지					
51	521-5	답	167	167	군산시						
52	522	전	154	154	군산시						
53	522-1	전	37	37	김동섭	군산시 영화동 9-5번지	주식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지상권		
54	522-5	임	19	19	장승희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21-7					
55	523	임	506	46	박혁주	군산시 토성길 16-7(사정동)	주식회사전북은행		지상권		
56	523-1	임	396	396	군산시						
57	525	대	334	22	박혁주	군산시 토성길 16-7(사정동)	주식회사전북은행		지상권		
58	525-1	대	400	400	군산시						
59	526-1	대	63	5	박혁주	군산시 토성길 16-7(사정동)	주식회사전북은행		지상권		
60	526-4	대	264	264	군산시						
61	526-5	도	44	44	군산시						
62	527-1	구	53	53	고병주	군산시 사정동 502번지					
63	527-2	답	44	24	군산시						
64	527-3	도	139	139	고병주	군산시 사정동 502번지					
65	527-4	구	10	10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6		527-6	답	994	994	군산시					
67		527-7	도	48	48	군산시					
68		528-1	종	3,318	17	대한예수교 침례회 군산교회	군산시 토성길 16-8(사정동)				
69		528-3	답	34	34	대한예수교 침례회 군산교회	군산시 토성길 16-8(사정동)				
70		529	전	249	4	전광준	김제시 서암동 390-1 서암3차동신아파트 805호				지분 5분의 1
						전광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동 902호				지분 5분의 1
						전 옥	군산시 사정동 536번지				지분 5분의 1
						전광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9-16번지				지분 5분의 1
						전후남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2 송천동1차쌍용아파트 103동1401호				지분 5분의 1
71	사정동	529-1	전	22	22	전광준	김제시 서암동 390-1 서암3차동신아파트 805호				지분 5분의 1
						전광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2 쌍용아파트 601동 902호				지분 5분의 1
						전 옥	군산시 사정동 536번지				지분 5분의 1
						전광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59-16번지				지분 5분의 1
						전후남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2 송천동1차쌍용아파트 103동1401호				지분 5분의 1
72		562-14	도	687	76	(국)농수산 부					
73		산8-3	임	957	34	군산시					
74		산8-4	임	41	41	장현숙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50번지				
75		산9-1	임	186	15	군산시					
76		산12-3	임	1,605	10	군산시					
77		산39	임	893	231	장홍오씨주 부공파군산 잡두소종중	군산시 구암동 154번지				
78		산50-2	임	198	115	고지환	충남 천안시 백석동 910번지 주공아파트 310동 101호				지분 2분의 1
						고용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64-1번지 명보빌라트 2동 302호				지분 2분의 1
79		산56-1	임	31,116	235	(국)산림청					
계		79필지		65,613	12,878						

군산시 공고 제2016-55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어은지구)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3-43호(2013.03.22.)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한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어은지구 조성공사”가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군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7-2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녹지)사업

2) 명 칭 :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어은지구 조성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1) 도로

구분	노 선 명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도 로	소로 2 - 959호	3~13.5	20,094	3~13.5	212	686	가.감속차로
	중로 3 - 72호	12	156	11.8	156	1,856.7	
	소로 1 - 437호	10	216	10.0	216	2,178.3	
	소로 2 - 983호	8	564	8.0	564	4,612.2	
	소로 2 - 984호	8	25	8.1	25	228.0	
	소로 2 - 985호	8	41	8.1	41	359.0	
	소로 2 - 986호	8	41	8.0	41	357.6	
	소로 2 - 987호	8	17	8.1	17	162.0	보행자도로
	소로 3 - 765호	3	102	2.9	102	302.1	보행자도로
	소로 3 - 766호	3	93	2.9	93	274.9	보행자도로
	소로 3 - 767호	3	10	3.1	10	31.5	보행자도로
	소로 3 - 768호	3	13	3.3	13	40.5	보행자도로
	소로 3 - 769호	3	13	3.2	13	40.0	보행자도로
	소로 3 - 770호	1.5	102	1.5	102	157.0	보행자도로
	소로 3 - 771호	1.5	150	1.5	150	231.5	보행자도로

2) 주차장

구분	시설명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비고
		면적(m ²)	면적(m ²)	
주차장	주차장 80호	230	230	

3) 공원

구분	시설명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비고
		면적(m ²)	면적(m ²)	
공원	소공원 15호	281	281.0	
공원	소공원 16호	443	422.2	
공원	소공원 17호	237	243.4	

4) 녹지

구분	시설명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비고
		면적(m ²)	면적(m ²)	
녹지	완충녹지 104호	1,295	1,035.2	
	완충녹지 105호	775	639.4	
	경관녹지 106호	302	145.1	
	경관녹지 107호	449	221.4	

라. 사업시행자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

마. 사업기간 : 2013. 03. 22. ~ 2014. 12. 19.

바. 준공검사일 : 2014. 12. 23.

사.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16 - 562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6. 4. 1.
2.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홍남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특수고무)	민원사무용 인증기 신규도입	홍남동

군산시 공고 제2016-60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내초지구)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3-42호(2013.03.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내초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3월 31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내초동 15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주차장)사업
 - 나. 명 칭 :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내초지구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도로(19개노선) : L=2,703m, B=8.0~23.0m, A=24,749.3m²

노선명	시설결정		완료 내용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중로 1 - 1	23	199	23	199	4,657.9	
소로 1 - 1	10	269	10	269	2,713.8	
소로 1 - 2	10	25	10	25	256.0	
소로 2 - 1	8	236	8	236	1,788.2	
소로 2 - 2	8	209	8	209	1,643.0	
소로 2 - 3	8	225	8	225	1,770.6	
소로 2 - 4	8	317	8	317	2,533.6	
소로 2 - 5	8	68	8	68	509.0	
소로 2 - 6	8	131	8	131	997.0	
소로 2 - 7	8	97	8	97	734.9	
소로 2 - 8	8	129	8	129	985.5	
소로 2 - 9	8	151	8	151	1,165.0	

노선명	시설결정		완료 내용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소로 2 - 10	8	42	8	42	289.4	
소로 2 - 11	8	41	8	41	289.3	
소로 2 - 12	8	41	8	41	289.7	
소로 2 - 13	8	100	8	100	765.4	
소로 2 - 14	8	126	8	126	965.9	
소로 2 - 15	8	292	8	292	2,357.2	
소로 2 - 16	8	5	8	5	37.9	
계		2,703		2,703	24,749.3	

나. 주차장 : 1개소

구분	시 설 명	시설결정	완료 내용	비 고
주차장	주차장 1	504m ²	502m ²	

다. 공원 : 1개소

구분	시 설 명	시설결정	완료 내용	비 고
공원	어린이공원 1	1,500m ²	1,500m ²	

라. 녹지 : 3개소

구분	시 설 명	시설결정	완료내용	비 고
녹지	완충녹지 5	50,951m ²	3,532.3m ²	
	완충녹지 1	222.0m ²	226.9m ²	
	경관녹지 1	2,905m ²	2,931.8m ²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

5. 사업기간 : 2013. 3. 22. ~ 2015. 5. 10.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